

11/20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98카합5681 광고물부착등금지가처분
신 청 인 부산교통공단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61의 1

대표자 이사장 김 창 원

대리인 변호사 박 국 홍

피 신 청 인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 노포차량기지 내

대표자 위원장 김 태 진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 재 인, 정 재 성, 김 외 숙, 최 성 주

주 문 1. 피신청인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당사자 사이
의 단체협약에 따라 피신청인을 위하여 설치된 홍보 전용 게시판
판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소유, 관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과 그 부속구조물, 별지 2 목록 기재 지하철역 구내 및 모

든 전동차량의 차체 내외에 벽보, 전단 등 일체의 광고물과 현

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 부착, 배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피신청인이 당사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설치된 홍보 전용 게시판

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소유, 관리하는 주문 1항 기재 건물 및 전동차

량 등에 소속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벽보나 전단 등 광고물을 설치, 부착, 배포하게 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명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19.

재판장 판사 진 병 춘

판사 박 창 렬

판사 심 형 섭

별지 1 목록

0 본사 및 현업소각 건물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33

대지 329.26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2층 지하 1층

지하철 승무관리소, 노포차량기지창, 시설관리소, 영선설비관리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6

대지 114.01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2층 지하 1층

신평차량기지창시설

-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61-1

대지 6.799㎡ 연면적 17.13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상9층 지하 2층

지하철 종합사령실 (본사)

별지 2 목록

순번	목 적 물	소 재 지	순번	목 적 물	소 재 지
1	신 평 역	사하구 신평동 646	25	명륜동역	동래구 명륜동 721-2
2	하 단 역	사하구 하단동 491	26	온천장역	동래구 온천동 156-1
3	당 리 역	사하구 당리동 323	27	부산대앞역	금정구 장전동 655-4
4	사 하 역	사하구 괴정동 661	28	장전동역	금정구 장전동 429
5	괴 정 역	사하구 괴정동 934-3	29	구서동역	금정구 구서동 475
6	대 티 역	사하구 괴정동 316-2	30	두 실 역	금정구 구서동 282
7	서대신동역	서구 서대신동2가 336-3	31	남산동역	금정구 남산동 136
8	동대신동역	서구 동대신동2가 376-3	32	범어사역	금정구 청룡동 47
9	토성동역	서구 토성동3가 11-3	33	노포동역	금정구 노포동 133
10	자갈치역	중구 남포동6가 117			
11	남포동역	중구 남포동1가 15			
12	중앙동역	중구 중앙동4가 89			
13	부 산 역	동구 초량동 1187			
14	초량동역	동구 초량동 1142			
15	부산진역	동구 수정동 1170			
16	좌천동역	동구 좌천동 406			
17	범천동역	부산진구 범천동 945-18			
18	부전동역	부산진구 부전동 573			
19	부전동역	부산진구 부전동 914			
20	양정동역	부산진구 양정동 408			
21	연산동역	연제구 연산동 1444			
22	연산동역	연제구 연산동 1515-1			
23	기제동역	연제구 기제동 72-25			
24	명륜동역	동래구 명륜동 51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 시

사 건 : '98가 2000 호 광고물부착등 금지 가처분

신 청 인: 부산교통공단

피신청인: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위 당사자간 부산지방법원 98카합 5681호 광고물부착등 금지 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한 신청인 부산교통공단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아 래

피신청인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당사자의 단체협약에 따라 피신청인을 위하여 설치된 홍보전용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소유,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133 대지 329,26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2층 지하1층 지하철 승무관리소, 노포차량기지창, 시설관리소, 영선관리소 건물과 그 부속구조물 및 연제역, 연산동역, 교대앞역, 동래역, 명륜동역, 온천장역, 부산대학앞역, 장전동역, 구서동역, 누설역, 남산동역, 범어사역, 노포동역구내 및 모든 전동차량의 차체내외에 벽보, 전단 등 일체의 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등을 설치, 부착, 배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2부 인

긴급상황시 승객 행동요령



1 비상통화장치

후(매울 닌)

Humetro

제소명령신청

사건 : 98카합5681 광고물부착금지가처분

채권자(피신청인)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61-1번지 부산교통공단
대표자 이사장 최 인 섭

채무자(신청인)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광 희

신청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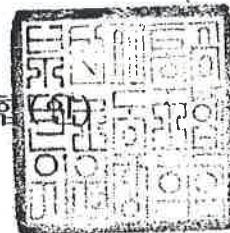
채권자는 제소명령 송달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안에 관할법원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채권자는 귀원 98카합5681호 광고물부착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만 받아 놓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 3월 12일

위 신청인 :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부산지방법원 귀중.

188-000

2

채무자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노포차량기지내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광희

609-360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4 민사부

결 정

사 건 2002카기 938 제소명령

채 권 자 부산교통공단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61의 1
대표이사 최 인 섭(결정당시 대표이사 : 김창원)

채 무 자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 노포차량기지내
대표자 위원장 김광희

주 문

채권자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관할법원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

이 유

이 법원 98카합5681 가처분 사건에 관한 채무자의 제소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6.

재 판 장 판 사 이 기 중

판 사 한 원 우

판 사 최 환

소

장

원 고 부산교통공단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61의 1

대표자 이사장 최 인 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국 홍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606호

피 고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

대표자 위원장 김 광 희

광고물등 부착금지의 소(소유권 및 관리권에 기한 방해금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가. 지정된 홍보전용 게시판(청구원인에 나오는 123곳)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과 그 부속구조물, 별지 2 목록 지하철역 구내 및 모든 전동차량의 차체 내외에 벽보, 전단 등 일체의 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원고 사업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물 및 선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원, 피고의 지위

원고 부산교통공단은 부산교통권역내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피고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은 원고공단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2. 원, 피고간의 단체협약 체결

가. 원고 공단은 1997. 7. 15.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1호증의 1, 2)

“부산교통공단과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관련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체로서 시민을 위한 안전운행 확보, 부산교통공단의 융창,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직장건설을 위해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전문).

“공단은 조합이 전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 단체임을 인정한다.”(제2조)

“공단은 조합이 공단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제19조 제1항),

“공단은 현업기관마다 조합 홍보전용 게시판을 별도 설치하고 조합이 인쇄 물 게시·첨부·배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통신 및 방송기기의 사용의 퇴시 협조한다”(제19조 제2항)는 내용입니다.

나. 노동조합 홍보전용 게시판 설치현황

원고 공단은 위 단체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피고 조합 홍보전용 게시판을 신평역~노포동역 사이의 34개역 역무실에 각 1개, 노포차량기지창에 3개, 신평차량기지창에 2개, 노포승무관리소에 2개, 신평승무관리소 및 역무자동설비관리소에 각 1개 등 43개의 게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

또한, 원고 공단은 위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그 이후에 개통(1999. 6. 30.)된 지하철 2호선의 각 현업기관에도 피고 조합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 11. 15. 전기사무소의 2호선 각 분소 등에 17개, 2001. 8. 4. 2호선 2단계 10개역 역무실에 각 1개를 설치하는 등 80개의 게시판을 상설 설치하여

전 결 2	결 위원장 2/2
접수일시 2002년 7월 10일	수 위 원 장
처 과 부	사무국장 01
	관 두 장 2/2

부 산 지 방 법 원

2002. 7. 10. 판결선고	(인)
2002. 7. 10. 원본영수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가합4781 광고물등부착금지

원 고 부산교통공단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최인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피 고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

위원장 김광희

변 론 종 결 2002. 6. 26.

주 문

1. 피고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지정된 홍보전용 게시판(별지 조농조합계 시판현황 기재 123곳)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건물과 그 부속 구조물, 별지 2목록 지하철역 구내 및 모든 전동차량의 차체 내외에 벽보, 전단 등 일체의 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공				검			
장 법 규 부 장	선 송	사무부	조 직 부 장 교				
부 장	산 업 부 장	후 복 후 생 부 장	인 사 부 장	여 성 부 장			
1			26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고 사업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물 및 선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지정된 홍보전용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건물 등에 벽보, 전단 등 일체의 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 부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고 사업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물 및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도 구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10.

재판장

판사

김 신

김 신



판사

김남형

김 남 형



판사

주진암

주 진 암



청 구 원 인

1. 원, 피고의 지위

원고 부산교통공단은 부산교통권역내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피고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은 원고공단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2. 원, 피고간의 단체협약 체결

가. 원고 공단은 1997. 7. 15.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1호증의 1, 2)

“부산교통공단과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관련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체로서 시민을 위한 안전운행 확보, 부산교통공단의 융창,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직장건설을 위해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전문).

“공단은 조합이 전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제2조)

“공단은 조합이 공단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19조 제1항),

“공단은 현업기관마다 조합 홍보전용 게시판을 별도 설치하고 조합이 인쇄물 게시·첨부·배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통신 및 방송기기의 사용의뢰시 협조한다”(제19조 제2항)는 내용입니다.

나. 노동조합 홍보전용 게시판 설치현황

원고 공단은 위 단체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피고 조합 홍보전용 게시판을 신평역~노포동역 사이의 34개역 역무실에 각 1개, 노포차량기지창에 3개, 신평차량기지창에 2개, 노포승무관리소에 2개, 신평승무관리소 및 역무자동설비관리소에 각 1개 등 43개의 게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

또한, 원고 공단은 위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그 이후에 개통(1999. 6. 30.)된 지하철 2호선의 각 현업기관에도 피고 조합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 11. 15. 전기사무소의 2호선 각 분소 등에 17개, 2001. 8. 4. 2호선 2단계 10개역 역무실에 각 1개를 설치하는 등 80개의 게시판을 상설 설치하여 2002. 3. 현재 홍보전용 게시판은 총 12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갑제2호증의 2 내지 4)

3. 원고의 소유권 내지 관리권 침해 및 피고에 대한 방해금지 청구권(광고물등 부착에 대한)등

가. 원고 공단은 전항에서 보는 바와같이 피고 조합의 홍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게시판을 설치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은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인 본사의 건물과 전동차의 객실 및 운전실 전면 유리창, 역사의 매표소 등 지하철 이용고객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공단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거나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 등의 각종 유인물등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부착하여 지하철 운행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공단의 업무를 방해함에 따라 원고 공단은 피고조합의 계속적인 불법행위등 업무방해에 대하여 1998. 11. 19.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광고물 부착등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갑제8호증)

나. 원고 공단은 피고 조합의 스티커 등의 불법 부착시마다 간부직원 및 비조합원들로 구성된 광고물 철거조를 편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광고물 제거를 위한 연장근무를 하였고,(갑제3호증의1 내지 5)

청소용역원에게 유리세정제, 스크레이프 등의 화학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등을 제거토록 하여 이에 소요된 인건비가 1996년에는 840,000원 및 1997년에는 1,164,000원이나 지출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갑제4호증의1 내

지 4, 강제5호증의1 내지 4, 6호증의1 내지 5)

다. 연도별로 피고 조합이 부착한 광고물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4년도에는 “지하철 안전사각지대”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의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원고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1995년도에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교육계획을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를 노포승무관리소 현관등에 배포하여 근로자를 불법선동 하였으며,

1996년도에는 해고자 복직문제, 단독승무 반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동차 출입문이나 노포차량기지창 건물에 부착하여 근로자들을 불법선동 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임금협상, 직제개편 등에 대하여 전동차내, 본사현관 입구 및 노포승무관리소 등의 벽면에 광고물을 무단게시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1인승무와 관련한 직제문제에 대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다가 급기야 불법파업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광고물 부착등 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1999년도에 들어와서도 해고자 20여명이 본사건물 현관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원직복직 등에 대한 유인물, 홍보물등을 불법으로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트 입구등에 부착하였고,

2000년도 및 2001년도에도 해고자 복직 및 전동차 탈선사고 등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제작 불법부착 등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갑제7호증의 1내자 6)

피고측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등 구체적 광고내용의 위법성에 관하여는(너무 방대하여) 차후 준비서면으로 정리주장 하겠습니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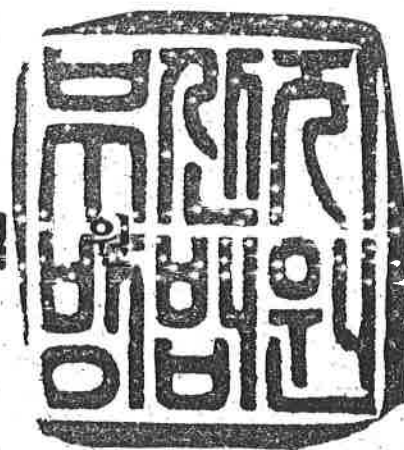
원고 공단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 전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소유시설물에 대한 점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의 광고물등의 부착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방해를 배제하는 권리 및 단체협약에 의한 단체협약이행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지정 설치된 홍보전용 게시판이외의 장소에서의 광고물 부착 등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공단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사건의 소에 이르렀습니다.

정 본 입 니 다.

2002. 7. 10.

부 산 지 방 법



법원사 김 재 룡인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이 판결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한다.

민소 151 ②

주: 이 정본에는 법원의 인을 찍을 것.

2-139

판 결 (조 정) 일	02. 2. 24.
판 결 (진 정) 승 판 일	02. 3. 27.
상 소 마 감 일	

부 산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2나8704 광고물등부착금지
(원심사건 :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4781)

원고, 피항소인 부산교통공단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61-1
이사장 이항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피고, 항소인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
위원장 오영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는 지정된 홍보전용 게시판(별지 4.목록 노동조합 게시판 현황기재 123곳)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과 그 부속구조물, 별지 2 목록 지하철역 구내 및 별지 3 목록 전동차량의 차체 내외에 벽보, 전단 등 일체의 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502

2. 청구원인

가. 원고 부산교통공단은 부산교통권역내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피고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은 원고공단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1) 원고 공단은 1997. 7. 15.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을 체결하였다.

“부산교통공단과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관련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체로서 시민을 위한 안전운행 확보, 부산교통공단의 융창,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직장건설을 위해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전문)

“공단은 조합이 전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

“공단은 조합이 공단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단은 현업기관마다 조합 홍보전용 게시판을 별도 설치하고 조합이 인쇄물 게시·첨부·배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통신 및 방송기기의 사용의뢰시 협조한다.” (제19조)



(2) 원고 공단은 위 단체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4목록 기재와 같이 총 123개의 게시판을 설치하였다.

다. (1) 원고 공단은 피고 조합의 홍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게시판을 설치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은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인 본사의 건물과 전동차의 객실 및 운전실 전면 유리창, 역사의 매표소 등 지하철 이용고객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공단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거나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 등의 각종 유인물등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부착하였다.

(2) 원고 공단은 피고 조합의 스티커 등의 불법 부착시마다 간부직원 및 비조합원들로 구성된 광고물 철거조를 편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광고물 제거를 위한 연장근무를 하였고, 청소용역원에게 유리세정제, 스크레이프 등의 화학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 등을 제거토록 하여 이에 소요된 인건비가 1996년에는 840,000원 및 1997년에는 1,164,000원이나 지출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라. 원고 공단은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 전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소유 시설물에 대한 점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의 광고물 등의 부착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방해를 배제하는 권리 및 단체협약에 의한 단체협약이행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지정 설치된 홍보전용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서의 광고물 부착 등의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지정된 홍보전용 게시판(별지 4 목록 기재 노동조합 게시판 현황 기재 123

곳)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과 부산 금정구 청룡동 47 부산교통공단 제1 전기사무소(범어사역) 및 그 부속구조물, 별지 2 목록 기재 지하철 역 구내, 별지 3 목록 기재 전동차량의 차체 내외에 벽보, 전단등 일체의 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만,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지하철 역 및 구내에 한하여 대합실에 1개, 상행선 승강장에 1개, 하행선 승강장에 1개씩 게시판을 설치하고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있다.

쟁의 발생시에는 상행선 승강장에 1개, 하행선 승강장에 1개씩을 추가할 수 있다.

게시판의 규격은 전지(全紙)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다만,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1)(2)(3) 건물에 한하여 현수막을 걸 수 있다. 그러나 공단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은 걸 수 없다. 만약 피고가 이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 경우 현수막 1개당 10,000,000원의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위 2. 3.항에서 인정한 게시판 및 현수막의 설치비용은 피고측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63

2003. 2. 24.

배론 (X)

재판장

판사

길기봉



판사

김경호



판사

한영표



정 본 입 니 다.

.2003. 2. 24.

부 산 고 등 법 원

법원사무관 정 수 근

민소162③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이 판결을 승복한 날로
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39